

## 1. 개정이유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용어가 대중골프장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일괄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의 정비를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바뀔에 따라 용어 일괄 변경  
(대중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예정)  
2) 행정규제: 해당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대중골프장업”을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를 “(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대중골프장”을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골프장”을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로,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이관”을 “비회원

제 골프장 조성비의 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대중골프장”을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하며, 같은 호 중 “대중골프장의”를 “비회원제 골프장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대중골프장업의 세분)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중골프장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 한다.                                                                      | 제7조(대중골프장업의 세분) ---<br>-----<br>-----<br>-----.                                                      |
| 1. 정규 <u>대중골프장업</u>                                                                                                             | 1. --- <u>비회원제 골프장업</u>                                                                              |
| 2. 일반 <u>대중골프장업</u>                                                                                                             | 2. --- <u>비회원제 골프장업</u>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제11조( <u>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u> ) 영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u>대중골프장의</u> 준공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신청 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u>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u> ) -----<br>-- <u>비회원제 골프장</u> -----<br>-----<br>-----<br>-----<br>--. |
| 제12조( <u>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u> )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u>대중골프장</u> 조성비의 관리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 제12조( <u>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u> ) ① -----<br>-----<br>----- <u>비회원제 골프장</u> -----<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신청 시

④ (생략)

제13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등

③ -----  
--- 비회원제 골프장 -----  
-----  
-----  
-----  
-----.

1. ----- 비회원제 골프장 -----  
-----
2. ----- 비회원제 골프장 -----  
-----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① -----  
-----  
-----  
-----  
-----  
-----  
-----.

② ----- 비회원제 골프장 -----

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이관요청 시

2. 3. (생략)

③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골프장의 설치 장소
2. 대중골프장의 설치 규모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과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설치 장소, 설치 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  
---.

1.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이관 -----  
---

2. 3. (현행과 같음)

③ -----  
-----  
-----.

1. 비회원제 골프장-----
2. 비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  
-----  
-----.
3. 비회원제 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의 -----  
-----  
-----.

4. 비회원제 골프장-----